

#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서 [안내문]

※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신고 의무화 및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으로 6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※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 바라며,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3호에 의거 과태료(500만원)가 부과되며, 거래 신고필증 미발급 및 추후 신고필증 미제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구분	항목	상세항목	내용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	•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(적금 등 / 해외예금 여부 체크)
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 매도액	• 본인명의로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한 자금
	④ 증여·상속	증여·상속 부동산 매도액	• 증여 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(신고 여부 체크)
	⑤ 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•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인 현금(외화 반입 신고 여부 체크)
		펀드/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 등	• 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•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⑥ 부동산 처분대금	타 부동산 매도액	•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• 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중전부동산 권리가액		• 재건축/재개발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	
이에 준하는 자금		• 부동산등의 매각(보증금 회수)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기관 대출 등	• 부동산 담보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/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
	⑧ 금융기관 대출액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	• 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 주택의 포함여부 •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
	⑨ 임대보증금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•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/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
	⑩ 회사지원금·사채	금융기관 외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•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
	⑪ 그 밖의 차입금	금융기관 대출액/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	• 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조달 자금 방식	⑮ 계좌이체 금액	금융기관 계좌 이체 등	•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중전 임대차계약 보증금	•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•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 등
입주 계획	본인입주		•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	•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 시 (분가한 자녀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	•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• 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

- 제출하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작에 있어, 자세한 사항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